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2

발의연월일: 2020. 7. 8.

발 의 자: 구자근·김영식·조경태

김예지・윤두현・최형두

김용판 · 정희용 · 김석기

박성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증축·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취득세의 50%(대수선의 경우 25%)를 경감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35%(비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75%)를 경감하고 있음.

산업을 효율적으로 집적하고 입주기업에게 우수한 경영 여건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조세특례는 지속될 필요가 있음. 다만, 지방 소재 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기업은 수도권 기업에 비해 사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지방 소재 산업단지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보다 강화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임.

이에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75%(대수선의 경우 50%)를 경감하고, 재산세는 90%까지 경감하고자 함(안 제78조제4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4항제2호가목 전단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으로 하고, 같은호 나목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2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로 하며, 같은호 다목 중 "100분의 75"를 "100분의 9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	
(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감 내용	2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가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	
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	
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u>100</u>	<u>100</u>
<u>분의 50</u> 을 2022년 12월 31	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
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에 있는 산업단지등의 경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u> 우에는 100분의 75)</u>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u>.</u>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	
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u></u>

-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 (「건축법」 제2조제1항제 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 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 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정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 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 ⑧ (생 략)

나
<u>100분의 25(수도권</u>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
지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u>50)</u>
다
<u>1</u>
00분의 90
⑤ ~ ⑧ (현행과 같음)